

● 법무부고시 제2013 - 151호

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 별표1의 제27호 거주(F-2)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, 학력,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(법무부고시 제11-384, 2011.8.9. 개정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17일

법무부장관

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(F-2)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, 학력,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고시

1. 적용대상자

-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 유학(D-2), 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구직(D-10)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* 으로서 아래 결격사유**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

* 예술흥행(E-6) 자격자 중 호텔·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(E-6-2)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, 유학(D-2) 및 구직(D-10)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(예정자 포함)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

** (결격사유)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(단,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)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,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, 공공복리,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

2. 기준 및 평가방법

- 기준 :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
- 평가방법 : 연령 · 학력 · 한국어능력 · 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
- 평가표

구분 (배점)	공통항목(90점)				가감점 항목(30점)		총점 (120)	합격 여부
	연령(25)	학력(35)	한국어 능력(20)	현소득 (10)	가점(30)	감점(-5)		
점수								

구분	18-24세	25-29세	30-34세	35-39세	40-44세	45-50세	51세 이상
배점	20	23	25	23	20	18	15
기준	• 여권상 생년월일 (평가일 기준)						

학력	박사		석사		학사		전문학사		고졸
	이공계/ 2이상	인문계	이공계/ 2이상	인문계	이공계/ 2이상	인문계	이공계/ 2이상	인문계	
배점	35	33	32	30	28	26	25	23	15
기준	•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(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)								

한국어 능력	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(고급)		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(중급)		기본적인 의사소통 (초급)	
	6급	5급	4급/4단계	3급/3단계	2급/2단계	1급/1단계
배점	20	18	16	14	12	10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(S-TOPIK)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(1-4단계) 					

연간 소득	1억원 이상	9천만-1억원 미만	8천만-9천만 원미만	7천만-8천만 원미만	6천만-7천만 원미만	5천만-6천만 원미만	4천만-5천만 원미만	3천만-4천만 원미만	2천만-3천만 원미만	2천만 원미만
배점	10	9	8	7	6	5	4	3	2	1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									

가점 항목	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	연간 소득세 납세실적					한국 유학 경험					국내 사회봉사 활동			해외 전문 분야 취업 경력		
		500만 원 이상	400-500만 원 미만	300-400만 원 미만	200-300만 원 미만	100-200만 원 미만	박사	석사	학사	전문학사	한국어연수	3년 이상	2-3년 미만	1-2년 미만	3년 이상	2-3년 미만	1-2년 미만
배점	10	5	4	3	2	1	5	4	3	2	1	5	3	1	5	3	1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: ‘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(자세한 사항은 www.kip.kr 참조)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: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한국유학경험 : 학위증 또는 수료증(한국어연수만 해당), 출입국정보시스템, 유학생 정보시스템 국내 사회봉사활동 : 해당 공공기관,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 (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)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: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·단체·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(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) 																

검점 항목	벌금 등 처분				불법체류
	신청인			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	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중 현 불법체류자 +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자
	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	1회(100-300 만원 미만)	1회(100만 원 미만)	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	
배점	- 3	- 2	- 1	- 1	- 1
기 준	• 범죄경력조회시스템,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)				

3. 시행일 :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